

# 추가 의견서

사 건 2024년 형제13639호 특가법위반(국고 등 손실)  
피 의 자 서욱 외 5명  
고 발 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고발인은 2024. 1. 14.자 제출한 고발장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1. 2020년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가 과거 협정상의 합의액의 일부로서 집행된 것이든 아니면 11차 특별협정 상의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로서 집행된 것이든 불문하고 그것이 국고손실로 되는 것은 다름 아닌 11차 협정 제2조의 불법부당한 이월규정에 의해서입니다.

11차 협정 제2조의 불법부당한 이월규정에 합의한 11차 협정 협상 당시 한국측 대표 및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조사관은 11차 협정 2조 이월규정의 불법성을 밝히고, 이로 인해 초래될 최소 4,307억 원에서 최대 7,245억 원에 이르는 피 고발인들의 국고손실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고발인이 서부지검에 고발했던 건(2021년 형제27417)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안(2022년 형제21763), 이번 고발 건(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 2024년 형제13639)은 2020년도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된 사안이기 하지만 엄연히 그 고발내용이 다릅니다. 이번 고발건을 앞서의 두 건의 고발건과 동일시하면서 이번 고발건 자체를 불송치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11차 협정 제2조의 이월규정이 한미 사이에 어떤 목계에 의해서 협정에 포함된 것인지 또, 어떤 근거로 2020년에 이뤄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선집행을 11차 협정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2.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가 과거 협정(8/9/10차 협정)의 합의액의 일부로서 집행됐다는 피고발인(국방부 관련자)의 진술은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국방부 측은 2020년도에 선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11차 협정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일부가 아닌 과거 협정의 합의액의 일부로서 집행된 것이라고 과거 종로서 수사관에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2022.3.31, 종로서 불송치 결정서).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과거 협정(8/9/10차 협정)은 이미 그 시효가 2020년에는 종료되어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폐기된 협정(즉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에 의한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예산집행은 법적인 근거를 결한 명백한 불법 이므로 이는 국방부 스스로 국고손실을 초래했음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3. 2020년도에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인건비의 경우처럼 11차 협정상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목적이 11차 협정(편성 당시에는 아직 미체결상태)의 이행을 위한 것임을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2020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자료」, 2019.8.1, 369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사업설명서대로 2020년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11차 협정 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지급을 위해 집행됐다면 1조 389억 원에서 선집행된 7,451억 원(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제외한 2,938억 원만 미국에 더 주면 됩니다. 그러나 11차 협정 제2조 이월규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게 주기로 한 돈은 2,938억 원이 아닌 그보다 4,307억 원이 더 많은 7,245억 원이므로 4,307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이 불법부당하다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국방부는 10차 협정 제7조를 근거로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예산 집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당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협정 하에서 선정되어 해당협정 기간에 미완성된 군사건설사업(현물지원사업)이나 군수지원사업(현물지원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것일 뿐 미완성사업비의 10차 협정 이후의 부담(어느 나라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재원이나 부담 책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10차 협정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10차 협정 7조에서는 언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차 협정 제7조를 근거

로 11차 협정의 적용기간에 속하는 2020년도의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국방부의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10차 협정 제7조를 근거로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선집행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집행이므로 그만큼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국회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을 11차 협정에서 정해지게 될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의결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과거 협정의 합의액의 일부로서 집행한 행위는 국회의 예결산 확정권한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자들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2020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11차 협정상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집행했다고 말을 바꾸면 국회가 의결한대로 집행한 것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11차 협정상 방위비분담금을 중복해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국고손실이 됩니다.

**5.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조의 이월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손실은 최소 4,307억 원에서 최대 7,245억 원입니다.**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은 2020년도에 선집행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은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규정에 따라 11차 협정 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추후에 미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선집행된 것은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도 선집행되었습니다. 때문에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뺀 2,938억 원만 추후 미국에 주어야 하는데 그보다 4,307억 원을 더 주는 것이므로 이 4,307억 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합니다.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은 왜 2020년에 인건비만 선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항목(즉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은 선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불법부당한 것입니다. 이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선집행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나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2020년에 선집행한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

은 11차 특별협정 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과는 별개로 과거 협정 (8/9/10차 협정)의 합의액의 일부로 집행된 것이라고 종로서 수사관에게 진술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진술처럼 11차 협정 협상 당시 한미 측 대표가 합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건비만 제외하고 다른 항목(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은 이월하는 것으로 11차 협정 제2조의 이월규정이 정해진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국방부의 종로서 진술처럼 2020년도에 선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11차 협정 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과는 무관한, 과거 협정 상의 합의액 일부로 하기로 한미 11차 협정 협상 대표가 내막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법적인 근거를 결한 불법적 합의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2024년 3월 25일 행한 서초서에서의 진술조서에 나와 있고 또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에도 아주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으로 주게 되어있는 7,245억 원도 줄 필요 없고, 줘서도 안 되는 돈으로 국고손실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차 협정 2조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 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2020년도에 편성돼서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비분담사업 예산은 11차 협정이 체결되기(2021년 3월) 전에 집행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 사업 예산은 본 예산 1조 389억 원이며 이중 인건비 5,005억 원, 군사건설비 3,710억 원, 군수지원비 1,67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결산(집행)을 보면 집행액 7,451억 원, 이중 인건비 3,144억 원, 군사건설비 3,306억 원, 군수지원비 1,001억 원, 미집행액(불용 및 이월액) 2,93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액(불용액)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차 협정 제2조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 규정은 11차 협정 전에 한국정부가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을 사후적으로 11차 협정 상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을 보면 2020년도에 집행된 인건비 3,144억 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급 적용의 원칙에 따른다면 나머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선집행도 당연히 소급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집행액의 처리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국고귀속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관행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얼마간이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으로서 더 이상 미국에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집행 이외의 돈(방위비분담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차 협정 2조의 이월규정은 인건비만 소급적용하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또 미집행액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11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 분담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11차 특별협정 2조에 의해 소급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법성은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규정에 의해 추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7,245억 원은 국고 손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급적용마저 관행과 배치되고 법적인 근거를 결한 가운데 임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우리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채 이뤄짐으로써 2조의 이월규정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불법부당한 소급적용을 규정한 11차 협정 이월규정에 합의한 협상대표 등이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조사가 이뤄져야 할 초점을 다시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집행된 7,451억 원의 법적 근거와 국회 승인여부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1조 389억 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고, 이 중 7,451억 원이 2020년 말까지 집행된 것도 국회 승인 없는 무단집행이므로 7,451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승인한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11차 협정 체결과 그 적용을 전제한 것으로, 2020년 말까지 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저절로 승인 무효가 됩니다. 이에 조사관은 2020년 집행한 7,451억 원(특히 이중 4,307억 원)의 법적 근거와 국회 승인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2) 2020년 4,307억 원을 집행했음에도 국민들을 속이고 이중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2020년 집행한 4,307억 원의 법적 근거가 유효기간이 끝난 과거협정이 될 수 없고, 그 출처도 '과거협정 합의액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4,307억 원의 법적근거는 인건비 3,144억 원과 마찬가지로 11차 협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조사관은 피고발인 측이 '과거협정 합의액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닌지, 실제 4,307억 원이 이중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명백해 밝혀내야 합니다.